39. 핀란드(Finland)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37년

○ 현행법 : 2006년(피용자 연금, 2007년 시행), 2007년(기초연금, 2008년 시행), 2007년(장애급여, 2008년 시행)

2. 제도형태

○ 기초연금제도 및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기초연금 : 핀란드 거주자

○ 사회보험 : 피고용자, 3세 미만 아동 무급 돌보미, 학위과정 등록 학생, 특정 사회보장 수급자

※ 특별제도 : 해상근로자, 자영자, 농부 및 공공부문 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사회보험 : 총 월 소득의 6.35%(53세 미만), 7.85%(53세 이상)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8.27이며 상한 없음

○ 자영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사회보험 : 비적용

○ 사용자

- 기초연금제도 : 없음
- 사회보험 : 월 평균보험료는 월급여의 17.7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8.27이며 상한 없음

○ 정 부

- 기초연금제도 : 비용 전액
- 사회보험 : 학위과정 등록 학생 및 3세 미만 아동 무급 돌보미 비용 전액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소득조사)

- 65세 도달자에게 지급. 16세부터 64세까지 기간의 80% 거주. 퇴직요건 없음
- 소득조사 : 타 연금(사회보험, 외국연금 포함)으로부터 가입자의 월소득이 €5,554를 초과하면 연금 철회
- 부분연금 : 16세부터 64세 까지 기간의 80%가 안되고 최소 3년의 거주 기간이 있으면 감액연금 지급
- 조기연금 : 63세로 부분 또는 완전 연금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연기연금 : 연기 가능. 나이제한 없음
- 자녀 보조금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
- 연금수급자 돌봄수당
  · 질병이나 장애에 의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기능 장애(개인적인 돌봄이나 필요한 가사를 할 수 없고 집밖으로 심부름을 갈 수 없는)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 안내, 관리나 추가적인 비용 필요성이 있어야 함; 수급자의 근로능력은 고려되지 않음. 수급자는 집이나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부분 노령연금, 부분 장애연금 또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연금수급자 주거수당(소득조사) : 핀란드 거주기간동안 주거비용에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파견근로자, 공무원, 학생, 피부양 가족 구성원일 경우 해외지급가능

• 노령 보장 연금(기초, 소득조사) : 16세 이후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한 65세

• 노령연금(사회보험)

- 퇴직연령은 63세(하한퇴직연령, 2027년까지 65세로 점진 상향, 2030년에는 기대수명 고려)부터 68세(상한 퇴직연령,2027년까지 70세로 점진 상향, 2030년에는 기대수명 고려)까지 유연하게 적용됨.
- 가입자가 3세 미만 자녀에게 무급 돌봄을 제공한 기간, 학위과정 학생(5년까지)이었거나, 특정 사회보험급여(질병, 출산, 산재급여, 소득관련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퇴직시 고용은 중단되어야 하나 연금 수급 중에는 새로운 취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부분연금 : 가입자의 근로이력에 기초한 다른 법정 소득관련 연금을 받지 않은 61세
- 고용은 계속될 수 있음
- 연기연금 : 연금은 퇴직하한연령이 지나면 연기가능. 나이제한 없음
- 근속연금 : 최소 38년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고용 직종에 종사한 63세,

근로능력 감소 판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보험 노령연금은 최대 1년 동안 또는 양자 혹은 다자협정에 의해 해외 지급 가능

○ 장애연금

• 기초장애연금(소득조사)
  - 16~64세인 자로 통상적인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이며 16세부터 연금개시 시기까지 기간의 80% 거주자
  - 소득조사 : 가입자의 다른 연금(사회보험 및 외국연금 포함)에서의 월 소득이 €55.54를 초과하면 연금 철회
  - 특정상황에서는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음
  - 부분연금 : 최소 3년의 거주기간이 있지만 16세부터 연금개시 시기까지 기간의 80%가 안되면 감액연금 지급
  - 자녀보조금 : 16세 이하 아동에 지급
  - 재활수당 : 30일 이상 재활 훈련 필요
  - 연금 수급자 돌봄 수당
    · 질병이나 장애에 의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기능 장애(개인적인 돌봄이나 필요한 가사를 할 수 없고 집밖으로 심부름을 갈 수 없는)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 안내, 관리나 추가적인 비용 필요성이 있어야 함; 수급자의 근로능력은 고려되지 않음. 수급자는 집이나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부분 노령연금, 부분 장애연금 또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연금수급자 주거수당(소득조사) : 핀란드 거주기간동안 주거비용에 지급
• 장애수당(16세 이상)
  - 완전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16~64세의 장애자
  - 사회보험청(SII) 의사가 언제든지 가입자의 장애정도 평가. 장애연금 수급자는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를 사회보험청에 알려야 함
  - 자녀 보조금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
• 장애수당(16세 미만)
  -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급
• 장애보장연금(기초, 소득조사)
  - 16세 이후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한 자로 장애판정을 받아야 함
  - 소득조사 : 수급자가 다른 연금(외국연금 포함)을 받으면 연금 철회
• 장애연금(사회보험)
  - 17세부터 하한 퇴직연령에 있는자로 최소 1년동안 지속될 60%이상의 근로능력상실 판정을 받고 질병수급자격이 없어야 함.
  - 특정 상황에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음
  - 부분연금 : 최소 1년 동안 지속될 40%~59%의 근로능력상실 판정을 받 은

경우 감액 연금 지급

- 연금 지급기관에서 근로능력 상실 판정
- 장애연금은 하한 퇴직연령에 중지되고 사회보험 노령연금으로 대체

• 현금재활급여(기초)

- 17세부터 하한퇴직연령까지로 최소 1년동안 지속될 질병,부상으로 일시적 장애를 가진 자
- 가입자 담당 의사는 근로에 복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재활계획을 제출해야 함. 연금지급기관은 가입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함
- 장애수당은 1년 이상 또는 특정상황에서는 상호 및 다자협정에 의거 지급 될 수 있음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기초, 소득조사)

- 가입자는 16세 이후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했어야 함.
- 소득조사 : 유족의 다른 소득원(타 연금 포함)에서의 월 소득이 €55.54를 초과하면 연금 일부 철회
- 수급가능 유족은 사망자가 65세 이전에 사망자와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반자 관계(동성커플의 경우만)에 있었으며 사망자와의 자녀가 있는 65세 미만의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최소 5년 동안 사망자와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반자 관계에 있었고 결혼당시 50세 미만이며 사망당시 최소 3년 동안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50세 이상인 배우자. 이전배우자가 사망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배우자에게 연금지급
- 배우자연금은 유족배우자가 50세 이전에 결혼(재혼) 또는 등록 동반자 관계에 있거나 65세 도달 시 중지
- 재혼정착금 : 유족배우자가 최소 1년동안 배우자 연금을 받았고 50세 이전에 결혼(재혼)하거나 등록 동반자관계에 있게 되면 지급
- 고아연금 : 18세(전일 학생인 경우 20세) 미만으로 가입자 사망한 연도에 핀란드에 거주하였거나 핀란드로 이주한 경우 지급
- 고아보조금(소득조사) :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 소득조사 : 고아보조금은 고아의 다른 소득원(다른 연금 포함)으로부터의 월 소득이 €55.54를 초과하면 철회

• 배우자 연금(사회보험, 소득조사)

- 사망당시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았거나 수급권이 있을 경우
- 소득조사 : 가입자의 다른 연금에서의 월 소득이 €695.50을 초과하면 연금이 철회 될 수 있음
- 수급가능 유족은 사망자가 65세 이전에 사망자와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반자

관계(동성커플의 경우만)에 있었으며 사망자와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동성, 이성), 자녀가 없다면 최소 5년 동안 사망자와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반자 관계에 있었고 결혼당시 50세 미만이며 사망당시 최소 3년 동안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50세 이상인 배우자. 이전배우자가 사망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배우자에게 연금 지급

- 배우자연금은 유족배우자가 50세 이전에 결혼(재혼) 또는 등록 동반자관계에 있으면 중지
- 고아연금 :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소득조사)

- 월 €628.85(독신) 혹은 €557.79(결혼 혹은 동거) 지급
- 소득조사 : 연금은 수급자의 다른 연금으로부터 €55.54를 초과하는 연 소득의 50%까지 감액
- 다른 연금으로부터의 월 소득이 €1,299.88(독신) 또는 €1,157.71(혼인, 또는 동거)을 초과하면 소멸
- 부분연금 : 완전연금에 필요한 기간보다 적은 거주기간 매년도마다 비율별로 감액
- 조기연금 : 정상 퇴직연령 이전에 청구하는 매월마다 영구적으로 0.4%씩 감액
- 연기연금 : 정상 퇴직연령 이후 연금이 연기된 월당 0.6%씩 증액
- 자녀 보조금 : 월 €21.93 지급
- 수급자 돌봄수당 : 수당은 필요한 돌봄 수준에 따라 다름; 월 €61.71(주간 도움필요), €153.63(일일도움 필요) €324.85(상시돌봄 필요)지급
- 수급자를 위한 주거수당(소득조사)
  · 수급자의 연 주거비용과 연간 기본 공제액 간 차액의 85% 지급. 수급자의 연간 가족수입이 추가공제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연간 가족 수입의 40%가 연간 기본 공제액에 추가됨
- 연간 기본공제액은 €610.42
- 추가공제 소득한도는 가족구성이나 가족 소득에 따라 €8,676부터 €13,936
- 지급시기 : 수당은 월별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생계비지수에 연계된 국민연금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 노령보장연금(소득조사)
  - 월 €775.27까지 지급
  - 소득조사 : 연금은 수급자가 받는 다른 연금 소득액에 따라 감액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생계비지수에 연계된 국민연금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 노령연금(사회보험)
  - 월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 월 소득×총증가율. 증가율는 17세부터 52세까지의 매 보험료 납부연도에는 1.5%; 53세부터 62세 까지는 1.7%; 퇴직하한 연령부터 상한연령까지는 1.5%
  - 평균 월 소득은 가입자의 평생 조정 소득에 기초. 과거소득은 임금(80%)과 소비자물가지수(20%)변동에 근거한 가중지수에 따라 조정
  - 노령연금 상한 없음
  - 노령연금은 청구시점 기대수명에 기초하여 조정
  - 부분연금 : 가입자는 퇴직 하한 연령 전 혹은 후에 적립된 연금액의 25% 또는 50%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액은 퇴직하한 연령이전 청구된 매월 0.4%씩 감액되고 퇴직 상한 연령 후 청구된 매월에는 0.4%씩 증가
  - 연기연금 : 퇴직 하한 연령후 청구된 매월에 0.4%씩 증가
  - 근속연금 :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 연금액 조정 : 급여액은 소비자 물가지수(80%)와 임금지수(20%) 변동에 기초한 가중치에 따라 매년 1월 조정

○ 영구장애연금
• 기초장애연금(소득조사)
  - 월 €628.85(독신) 또는 €557.79(결혼,동거) 지급
  - 소득조사 : 연금은 수급자의 다른 연금으로부터 €55.54를 초과하는 연 소득의 50%까지 감액
  - 다른 연금으로부터의 월 소득이 €1,299.88(독신) 또는 €1,157.71(혼인, 또는 동거)을 초과하면 소멸
  - 부분연금 : 완전연금에 필요한 기간보다 적은 거주기간 매년도마다 비율별로 감액
  - 자녀 보조금 : 월 €21.93 지급
  - 재활수당 : 장애연금의 10%가 지급
  - 수급자 돌봄수당 : 수당은 필요한 돌봄 수준에 따라 다름: 월 €61.71(주간 도움 필요), €153.63(일일도움 필요) €324.85(상시 돌봄 필요)지급
  - 수급자를 위한 주거수당(소득조사)

· 수급자의 연간 주거비용과 연간 기본 공제액간 차액의 85% 지급. 수급자의 연간 가족수입이 추가공제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연간 가족 수입의 40%가 연간 기본 공제액에 추가됨

- 연간 기본공제액은 €610.42
- 추가공제 소득한도는 가족구성이나 가족 소득에 따라 €8,676부터€13,936
- 지급시기 : 수당은 월별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생계비지수에 연계된 국민연금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 자녀 보조금 : 월 €21.93 지급

• 장애수당(16세 미만)
- 가입자 상황에 따라 월 €92.14,€215 또는 €416.91 지급

• 장애 보장연금(소득조사)
- 월 €775.27까지 지급
- 소득조사 : 연금은 타 연금수령액에 따라 감액
- 급여조정 : 급여는 생계비 지수에 연계된 국민연금 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장애연금(사회보험)
- 월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 월 소득×총증가율. 증가율는 17세부터 52세까지의 매 보험료납부연도에는 1.5%; 53세부터 62세 까지는 1.7%; 장애발생일로부터 퇴직하한연령까지의 매년도 예정 근로기간에는 1.5%
- 평균 월 소득은 장애 발생전 5년 동안의 가입자 소득에 기초.
- 장애연금 상한 없음
- 장애연금은 연금의 예정 근로기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시점 기대수명에 기초하여 조정
- 추가 보충급여 : 연속 5년간 연금을 받은 23세부터 55세 해당자
- 가입자의 취업소득이 장애발생 전 가입자 소득의 최소 60%인 경우 혹은 월 €737.45(둘 중 큰 금액)이면 연금이 정지 또는 취소됨.
- 부분장애연금 : 근로능력을 40~59% 상실한 경우 완전연금의 50% 지급. 가입자의 취업소득이 장애발생전 가입자 소득의 최소 60%인 경우 혹은 월 €737.45(둘 중 큰 금액)이면 연금이 정지 또는 취소됨.

• 현금 재활 급여
- 소득 관련 장애연금과 동일방식으로 산정. 가입자의 현업복귀를 위한 재활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33% 추가 지급
- 급여액 조정 : 소비자 물가 지수(80%)와 임금 지수(20%)에 기초한 가중지수에 따라 조정

○ 유족연금

• 기초유족연금(소득조사)

- 유족 배우자에게 배우자 사망 이후 월 €324,33을 최초 6개월간 지급
- 이후 월 €101.59의 기본액에 €527.26(독신) 및 €456.20(동거)의 소득조사에 의한 보충급여가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에게 추가지급
- 부양자녀가 없는 유족배우자에게는 소득조사에 의한 보충액만 지급
- 연금가치는 사망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다름
- 소득조사 : 보충급여는 유족배우자의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타연금 포함) 월 소득이 €55.54를 초과하면 소득의 50%까지 감액. 타 소득원으로부터의 월 소득액이 동거관계나 자녀 나이에 따라 €954.54 부터 €1,110.05를 초과하면 보충급여 소멸
- 재혼정착금 : 3년간의 배우자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
- 고아연금 : 월 €59.68을 자격있는 자녀에게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월 최고 €120까지 지급
- 고아 보충급여(소득조사) : 월 €90.26 까지 자격있는 자녀에게 지급
- 소득조사 : 고아 보충급여는 다른 유족 연금 월액과 €55.54 간 차액의 50%까지 감액. 다른 유족연금월액이 월 €236.05를 초과하면 소멸
- 급여액 조정 : 기초연금과 수당은 생활비 지수에 연계된 국민연금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연금(소득조사)
- 유족 배우자는 사망자가 수령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사회보험 노령, 혹은 장애연금액의 50%까지 수급
- 이혼수당을 받는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이혼 수당액에 따라 유족 배우자와 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소득조사 : 연금액은 유족 배우자의 다른 연금(지급되지 않은 연금 포함)으로부터 €695.50을 초과하는 월소득의 50%까지 감액됨

※ 소득조사 면제

① 65세 미만 유족인 배우자로 자신의 권리로 취득한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최초 6개월간 면제

②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도달하기 전까지 면제

- 고아연금 : 1인 고아인 경우 사망자 연금액의 33.3% 지급. 2인인 경우 58%. 3인인 경우 75%. 4인 이상인 경우 83.3% 지급
-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 연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초과하면 상응해서 감액)

- 급여액 조정 : 소비자 물가 지수(80%)와 임금 지수(20%)의 변동에 기초한 가중지수에 따라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보건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www.stm.fi
- 전반적 감독

○ 기초연금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www.kela.fi
  - 지역 사무소를 통한 기초 연금의 운영
  - 국회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가 사회보험청을 관리
  - 5개 보험 지구에서 노령 및 유족연금 결정(장애연금은 장애연금센터에서 결정)

○ 사회보험
- 핀란드 연금센터(the Finnish Center for Pension)
  - www.etk.fi
  - 삼자 위원회로 운영되며 사회보험제도 감독
  - 사회보험연금제도 운영자는 허가된 비영리 보험회사, 연금 기금, 재단
- 재정감독청(Finance Supervision Authority)
  - www.finanssivalvonta.fi
  - 운영자 감독

<2018년 ISSA 자료>